

추가약정서

(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무자 : (인)
주 소 :

채무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(이하 “본 추가약정”)합니다.

제 1조 (목적)

본 추가약정은 **무주택자 또는 1주택**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, 이하 “주택”이라 합니다.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¹⁾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(이하 ‘규제지역’) 또는 수도권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**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, 신규 구입 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**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약정입니다.

주1) “세대”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제 2조 (처분대상 주택)

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**보유**하고 있는 **1건의 주택**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 3조 (구입대상 주택)

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**구입**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 4조 (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)

- “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”으로서 규제지역 또는 수도권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조항을 적용합니다.
-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**대출실행일**(중도금·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제3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**규제지역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6개월**(이하 ‘**정해진 기간**’) **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**(명의이전 완료)해야 합니다.
-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한 경우에는 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제 5조 (구입주택 전입 의무)

-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**대출실행일**(중도금·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**6개월 이내**에 제3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.
-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항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,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


제 6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)

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**기한의 이익은 상실**하게 되고, 그에 따라 **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**를 집니다.

1. 제 4조에 따라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2조의 **처분대상 주택의 처분(명의이전 완료)을 중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**
2. 제5조에 따라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3조의 구입대상 주택 전입을 중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3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의 **처분대상 주택** 외에 다른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**보유**하고 있는 경우

제 7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

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**완제여부**에 관계없이 **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2)}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^{주3)}됩니다.**

주2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3) 「은행업감독규정」<별표6>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1. 제 4조에 따라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2조의 **처분대상 주택의 처분(명의이전 완료)을 중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**
2. 제5조에 따라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3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중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3.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하지 않거나, 제3조의 구입대상 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

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